

[]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
[]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
[] 출산전후급여등의

신청인	① 성명		② 생 년월일	
	③ 주소			
사업주	④ 회사명			
	⑤ 소재지			
⑥ 과오급 결정사유				
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				
⑧ 납부방법	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(회)		

[]출산전후휴가 급여등
위 지급된 []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중 잘못 지급된 금액을
[]출산전후급여등
「고용보험법」 제62조제3항·제77조·제77조의5제3항·제77조의10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·제125조의6제3항·제125조의12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심사청구안내

1.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(지방고용노동청장·지청장)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기 바랍니다.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편번호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 팩스번호 () /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/공개구분